

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3-81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1
2023-82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3-83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2023-84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8
2023-85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
----------	-------

발의일자	2023. 5. .
발 의 자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2022.1.13.)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입법 및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거창군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의안 심사·처리, 법령해석 등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직무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고문의 위촉,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고문의 의무사항,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6조)
- 라. 고문의 운영, 참석 회의 등 진행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마. 수당 및 소송비용, 자문실적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05. 23 ~ 05.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 및 법률 고문)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입법 및 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의 직무

- 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 나.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 다.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 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

2. 법률고문의 직무

- 가.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 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항에 관한 자문
- 다.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
- 라.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은 거창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 4. 법무·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5조(의무 등) ① 고문은 제2조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③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써 의회 및 의회위원의 의정활동(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등) ①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해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의장은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실적부 작성)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실적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 낙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사무실)		휴 대 폰	
주 소			
이 메 일			

본인은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거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거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 및 자문·운영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휴대전화, 주소, e-mail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입법·법률 고문직 위촉 후 임기기간 동안 ※ 단, '위원 이력 정보' 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해촉 후 3년 · 보존사유: 자문 활동 내역 및 위·해촉 내역 조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거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청 럽 서 약 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에 위촉됨에 따라 입법 및 법률 자문, 소송수행 등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거창군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거창군의회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의회장 귀하

위 축 장

소속:

직위:

성명:

귀하를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 . . ~ 20 . . .)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구분 종류	건 명	의뢰일	의뢰내용	의뢰인	고 문 소속·성명	회신일	회신내용	비 고

※ 종류란에는 입법자문, 법률자문, 소송사건,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
----------	-------

발의일자	2023. . .
발 의 자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청회를 제외한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관리 및 지원 등 진행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6조)
- 다. 결과의 반영,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실비보상을 정함(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05. 16. ~ 05. 2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토론회 등”이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총괄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 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붙임: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의회의회장 귀하

토론회 등 회의록

일시 및 장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 고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
----------	-------

제출일자	2023. . .
제 출 자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2022. 01. 13.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방법 개정(안 제2조)
- 나. 임기 등 신설(안 제2조의2)
- 다. 위원회의 기능 신설(안 제2조의3)
- 라. 위원회 개최의 통지 개정(안 제3조)
- 마.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바. 위임 규정 신설(안 제8조의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05. 30. ~ 06. 05.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의2,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2(임기 등) 위원의 임기·선임, 위원장의 선임·직무, 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

제2조의3(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 이라 한다) 제70조·제82조·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 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의3(위임)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신 설></p>	<p><u>제2조의2(임기 등) 위원의 임기·선임, 위원장의 선임·직무, 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u></p>
<p><신 설></p>	<p><u>제2조의3(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한다.</u></p> <p><u>② 위원회는 의장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0조·제82조·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u></p>
<p><u>제3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u></p>	<p><u>제3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u></p>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신 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8조의2(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임)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
----------	-------

제출일자	2023. . .
제 출 자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홍수숙, 신재화, 신충훈,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1. 7.)에 따라 거창군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 2, 3, 4조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05. 09. ~ 05. 15.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특성과 거창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사항
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치안관련 안전 시설 운영,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 단체 및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분야 사업
2.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6.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등 분야 사업
7. 지역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분야 사업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거창군의회,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 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 1명씩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	발의일자	2023. 5. .
		발 의 자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행정기관 민원실의 설치·운영,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의 연장,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05. 30. ~ 06. 05.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